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업무처리지침

- 별표 -

2019. 5

[별표1] 연수계획서 평가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배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1차 평가 기준	연수목적 (15점)	건축설계인재육성사업 추진 목적에의 부합성	15
	연수방법의 적절성 (25점)	연수방법의 적합성 및 계획된 연수기간의 적절성	10
		해외 연수기관의 인지도, 소속인력의 전문역량	15
	연수내용의 적합성 (20점)	기간별 업무수행계획의 달성 가능성 및 구체성	10
		계획된 담당 업무 또는 수행 프로젝트의 전문성 및 실무 적합성	10
	연수자 노력도 (20점)	포트폴리오의 참신성, 노력도, 완성도	20
2차 평가 기준	연수자 역 량 (20점)	설계역량(포트폴리오), 창의성 등 계획된 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역량 ¹⁾	20
합 계			100

주) 피평가자가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건축 관련 단체·협회에서 시행한 건축 관련 분야에서 1건 이상의 수상경력, 건축설계 공모전 입상 경력이 있는 경우 5점 이내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별표2] 연수비 지원 세부기준

<국가별 체재비 및 의료보험비 지급액>

구 분	국 가 명	화 폐	월 지 급 액			할인율	지 급 액
			체 재 비	의료보험비	합 계		
미합중국 달 러 화 지 급	미국(마)	USD	2,195	220	2,415	0.80	1,930
	미국(바)		2,296	220	2,516	0.80	2,010
	미국(사)		2,370	220	2,590	0.80	2,070
	미국(뉴욕 LA SF WDC)		2,370	220	2,590	1.00	2,590
	중국(나)	CNY	14,642	400	15,042	0.60	9,020
	중국(다)		15,289	400	15,689	0.60	9,410
	중국(홍콩)	USD	2,566	57	2,623	1.00	2,620
	남아프리카공화국		2,111	66	2,177	0.80	1,740
	러시아(사)		2,479	37	2,516	0.80	2,010
	러시아(아)		2,566	37	2,603	0.80	2,080
	러시아(차)		2,759	37	2,796	0.80	2,230
	러시아(모스크바)		2,759	37	2,796	1.00	2,790
	말레이시아		2,057	66	2,123	0.60	1,270
	멕시코		2,197	126	2,323	0.80	1,850
	모로코		2,197	66	2,263	0.50	1,130
	몽골		2,057	66	2,123	0.50	1,060
	미얀마		2,295	66	2,361	0.50	1,180
	베트남		2,057	57	2,114	0.50	1,050
	브라질		2,566	126	2,692	0.80	2,150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2,111	66	2,177	0.80	1,740
	사우디아라비아(제다)		2,057	66	2,123	0.80	1,690
	아랍에미리트연합		2,197	66	2,263	0.80	1,810
	아르헨티나		2,111	126	2,237	0.80	1,780
	아제르바이잔		2,402	37	2,439	0.60	1,460
	요르단		2,197	66	2,263	0.60	1,350
	우루과이		2,197	66	2,263	0.60	1,350
	우즈베키스탄		2,111	37	2,148	0.60	1,280
	우크라이나		2,295	37	2,332	0.80	1,860
	이란		2,197	66	2,263	0.50	1,130
	이집트		2,111	66	2,177	0.80	1,740
	인도		2,111	66	2,177	0.80	1,740
	인도네시아		2,111	66	2,177	0.60	1,300
	칠레		2,111	170	2,281	0.60	1,360
	카자흐스탄(아스타나)		2,295	37	2,332	0.80	1,860
	카자흐스탄(알마티)		2,197	37	2,234	0.80	1,780
	카타르		2,295	66	2,361	0.80	1,880
	케냐	2,197	66	2,263	0.60	1,350	
	코스타리카	2,057	126	2,183	0.60	1,300	
	콜롬비아	2,197	40	2,237	0.50	1,110	
	태국	2,111	66	2,177	0.60	1,300	
페루	2,111	126	2,237	0.50	1,110		
피지	2,111	66	2,177	0.50	1,080		
필리핀	2,057	66	2,123	0.50	1,060		

구 분	국 가 명	화 폐	월 지 급 액			할인율	지 급 액
			체 재 비	의료보험비	합 계		
현지화 지급국	영국	GBP	1,812	45	1,857	0.80	1,480
	영국(런던)	GBP	1812	45	1,857	1.00	1,850
	캐나다	CAD	2,732	61	2,793	0.80	2,230
	일본(차)	JPY	304,427	10,000	314,427	0.80	251,540
	일본(자)	JPY	280,463	10,000	290,463	0.80	232,370
	일본(도쿄)	JPY	304,427	10000	314,427	1.00	314,420
	프랑스	EUR	2,107	112	2,219	0.80	1,770
	프랑스(파리)	EUR	2,107	112	2,219	1.00	2,210
	독일	EUR	2,107	184	2,291	0.80	1,830
	그리스	EUR	2,026	74	2,100	0.80	1,680
	네덜란드	EUR	2,107	67	2,174	0.80	1,730
	노르웨이	NOK	20,306	585	20,891	0.80	16,710
	뉴질랜드	NAD	3,961	77	4,038	0.60	2,420
	대만	TWD	77,972	2,142	80,114	0.80	64,090
	덴마크	DKK	16,856	1,058	17,914	0.80	14,330
	루마니아	EUR	1,786	46	1,832	0.60	1,090
	벨기에	EUR	2,107	126	2,233	0.80	1,780
	불가리아	EUR	1,786	46	1,832	0.60	1,090
	세르비아	EUR	1,786	46	1,832	0.60	1,090
	스웨덴	SEK	20,813	294	21,107	0.80	16,880
	스위스	CHF	3,771	231	4,002	0.80	3,200
	스위스(제네바)	CHF	3,771	231	4,002	1.00	4,000
	스페인	EUR	2,026	43	2,069	0.80	1,650
	슬로바키아	EUR	1,786	46	1,832	0.60	1,090
	싱가포르	SGD	3,307	122	3,429	1.00	3,420
	아일랜드	EUR	2,107	74	2,181	0.60	1,300
	오스트리아	EUR	2,107	103	2,210	0.80	1,760
	이탈리아	EUR	2,107	75	2,182	0.80	1,740
	체코	EUR	1,786	46	1,832	0.60	1,090
	크로아티아	EUR	2,026	46	2,072	0.50	1,030
	터키	EUR	2,124	45	2,169	0.60	1,300
	포르투갈	EUR	2,026	74	2,100	0.80	1,680
	폴란드	EUR	1,786	46	1,832	0.60	1,090
핀란드	EUR	2,187	58	2,245	0.80	1,790	
헝가리	EUR	1,786	30	1,816	0.80	1,450	
호주	AUD	2,992	143	3,135	0.60	1,880	

<국가별 지역 구분>

구 분	지 역
미국(마)	애틀란타, 휴스턴, 하갓나
미국(바)	미국, 국제연합, 보스톤, 시애틀, 시카고, 앵커리지
미국(사)	호놀룰루
중국(나)	시안(서안), 광저우(광주), 선양(심양), 청두(성도), 칭다오(청도), 우한(무한)
중국(다)	중국, 상하이(상해)
일본(자)	고오베, 나고야, 나가타, 삿포로, 센다이, 오사카, 후쿠오카, 히로시마
일본(차)	일본, 요코하마
러시아(사)	유즈노사할린스크
러시아(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르쿠츠크
러시아(차)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 1) 출국일 10일 전 2개월분의 월지급액을 사전에 지급할 수 있다.
- 2) 월지급액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단, 2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한다.

<항공료 등 지급상한액 및 지급방법>

지 급 항 목	지급상한액	지 급 방 법
왕복항공료	5백만원	실비지급
비자발급비	3백만원	
사전교육비	2백만원	

- 1) 출국 및 귀국 항공노선은 해당 훈련지역 최단경로로 예약하여야 한다.
- 2) 항공료 정산시 항공여정안내문, 영수증, 예약확인증, 항공운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항공료는 2등석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4) 비자발급비는 출국전까지 정산하여 실비로 지급한다.
- 5) 사전교육비는 출국전까지 정산하여 실비로 지급한다.